

[붙임]

# 2021년(제41회) 대구시현장교육연구대회 추진 요강

1. 연구 주제: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

## 2. 대회 취지 및 관계 법령

본 연구대회는 교원의 전문직 자질 향상을 위한 자기연찬의 동기를 제공하고, 교육현장에서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기여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1952년부터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주도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시행의 법적근거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연구실적 평정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 3. 연구 분과(1인 1분과, 공동작 가능)

| 영역                   | 세부 분과   |
|----------------------|---|
| 교과분과영역<br>(10개 분과)   | ① 국어(한문포함) ② 도덕 ③ 사회(역사포함) ④ 수학 ⑤ 과학<br>⑥ 실과(기술가정) ⑦ 체육 ⑧ 음악 ⑨ 미술 ⑩ 외국어 |
| 인성·창의분과영역<br>(4개 분과) | ① 인성교육 ② 창의적체험활동<br>③ 생활지도(상담,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 등)<br>④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 교직분과영역<br>(2개 분과)    | ① 교육행정(학교경영, 교직생활, 교육정책개발연구, 평생교육·교육복지)<br>② 교육과정운영                     |
| 유아·특수분과영역<br>(3개 분과) | ① 유아교육 ② 특수교육(청각장애·시각장애·정신지체·지체장애·정서장애)<br>③ 영재 및 학습부진아교육               |

\* 진로·직업 관련은 종속변인이나 수업 내용에 따라 창체 혹은 생활지도 등에 응모

\* 출품편수에 따라 분과별 혹은 영역별 통합심사 가능함.

\* 보고서 겉표지에는 반드시 영역이 아닌 '세부 분과'를 기재해야 함.

**ex) 교육행정(학교경영), 특수교육(정서장애) 등으로 표기**

## 4. 추진 계획

### 가. 응모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및 별표와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 단, 본 연구대회 및 타 연구대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제재(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출품할 수 없음.

### 나. 연구보고서 공모

1) 1차 보고서 응모(온라인으로만 접수)

가) 제출 마감일: 2020. 6. 19.(금) 17:00

(대구교총 홈페이지 tfta.or.kr → 현장연구 → 1차 보고서 제출)

- 나) 제출 서류 · 분량: 1차 보고서 1부만 업로드, A4 5쪽 내외
- 다) 2차 제출 대상자 결과 발표: 2020. 6월 말경
- 라) 유의사항: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탑재해야 접수 처리됩니다.
- 2) 2차 보고서 응모
  - 가) 제출 마감일: 2021. 2. 15.(월) 16:30 대구교총 사무국
  - 나) 제출 서류: 2차 보고서 1부, 출품신청서 1부(소정 양식), 보고서 파일 저장물 1매.  
(**비회원은 2차 보고서 제출 시** 참가비 6만원 납부. 농협 725-01-171163 대구교총)
  - 다) 제출 대상: 1차 보고서 입선 교원
  - 라) 보고서 분량: 좌철, 70쪽 내외(A4 양면 인쇄, 부록 포함 및 합본, 스프링철 지양)
- 3) 선행 연구물 도움: 교총 교육자료실(<http://lib.kfta.or.kr>)
- 4)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2021. 4월 예정

## 5. 시상 내용

- 가. 지역대회: 최종보고서(2차 보고서) 제출 편수의 40%이내 입선(1·2·3등급의 비율은 1:2:3 유지)
- 나. 전국대회: 지역대회 1·2등급(출품 범위 및 시상 내용은 인정권자의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6. 보고서 심사 기준(100점 만점)

- 가. 연구의 현장 적용성(50점)
  - 1) 연구가 현장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
  - 2) 연구내용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
  - 3)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나. 연구 내용(25점)
  - 1) 연구내용을 일선교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 2) 연구내용의 분석력과 논리는 적절한가?
  - 3) 연구내용이 현장교육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가?
- 다. 연구방법(15점)
  - 1) 연구방법이 연구내용에 적절한가?
  - 2) 연구의 도구 및 자료 분석이 연구내용에 적합한가?
  - 3) 연구의 체제 및 형식이 창의적인가?
- 라. 연구주제의 접근성(10점)
 

연구주제 및 내용들이 한국교총이 설정한 앞의 **1. 연구 대주제**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

※ 출품편수에 따라 분과별 또는 영역별 통합심사 진행함.

## 7. 보고서 작성의 주안점

- 가. 어느 분과를 연구하든지 연구자의 연구주제는 앞의 **1. 연구 대주제**가 기본 배경이 되도록 함.
- 나. 연구주제는 연구의 핵심이 부각되도록 간결하게 압축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은 현장교육 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함.
- 다. 연구 범위를 가급적 문제 해결 분야로 집약시켜 현장교육연구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록 함.

- 라. 현장교육연구는 학술연구와는 달리 현장교육 문제의 개선이나 발전에 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논리 전개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것이 필요하며, 문제해결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함.
- 마. 연구는 기초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주제선정,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 연구의 목적, 문제의 제기 및 가설 설정, 연구자의 여건, 연구의 시기, 자료수집 가능성, 행·재정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반드시 중간 점검을 통해 연구의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진행함.
- 바. 선행연구 내용을 1행 이상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아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잡다한 사항의 인용이나 참고문헌의 나열은 연구보고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 사. 불필요한 통계의 사용을 지양하고 반드시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함.
- 아. 연구의 내용에 적합한 연구분과를 선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연구보고서 작성 형태를 탈피하여 현장교육의 실재를 공개·보고하는 형식의 연구보고서가 바람직함.

## 8. 보고서 출품 시 유의사항

- 가. 보고서 겉표지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분과·주제·해당연도(2021)·소속·직위·성명 등을 기재하면 됨.
- 나. 2개 분과 동시 응모는 불가하며, 파견교사는 원적지의 해당 시·도교총에 응모하여야 함.
- 다. 타 연구대회(전국교육자료전 포함) 중복 출품은 가능함.
  - \* 단, 출품한 연구보고서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일을 기준으로 타 연구대회에 기 입상한 사실이 있을 경우 표절·모작 혹은 입상취소 처리함.
- 라. 직위 및 학교급별이 서로 다른 교원과의 공동작은 출품할 수 없음.
- 마. 공동작일 경우 공동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바. 시범학교 운영연구,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연구 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할 경우 표절 처리함.
- 사. 제출 서류 미비 시 연구보고서 접수가 취소될 수도 있음.
- 아. 기 입상한 본인의 연구보고서(입상등급에 관계없이)를 현격히 심화·변형·발전시키지 않고 재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등외 및 표절 처리함. 기존에 입상한 본인의 연구보고서와 유사하게 재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현격히 심화·변형·발전시켰음을 입증하는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자. 교감 및 장학사, 연구사는 직무와 직결된 연구이어야 함.(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감은 2차 보고서 및 전국보고서 제출 시 출품신청서에 해당 사항 기재)
- 차. 출품자가 잘못 지원한 분과 또는 모호한 분과의 경우, 교총에서 출품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카. 입선자의 경우 우수보고서의 일반화 사업(간행물, 통신 매체의 공개 등)에 동의하여야 함.
- 타. 심사 후에도 표절로 드러난 연구보고서는 입상을 취소함.
- 파. 표절 판정 시에는 판정 입상취소일로부터 3년간 연구대회 참여를 제한함.

## 9.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의사항

『연구대회관리규정』(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69호, 2004. 11. 22. 제정) 제21조(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및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시 입상 취소, 징계 등의 제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교육부의 연구대회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자 명세(성명·소속·출품주제)가 공시되고 입상작이 탑재되며,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불공정 행위를 행한 응모자에 대한 제보가 언제든지 가능함.)

### 가. 불공정 행위의 유형

- 표절과 모작(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참조), 대리 연구물 제출 또는 그 위탁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연구대회 출품 자료 취득 및 제공 행위
- 고의적으로 출품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출품자나 관련 교원의 의무위반 행위
- 그 밖에 연구대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행위

### 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 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및 조치됨.

#### 1) 입상 취소

####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 3)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부장관,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 시·도교육감에게 입상 취소자 서면 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음.)

## 10. 표절 및 모작 판단 기준의 예

가. 각종 선행 연구물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인용표시에 관계없이)

나.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가설(중점), 결론 또는 제언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선행연구와 같은 경우(인용표시와 관계없이)

다. 연구의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절차 또는 특수한 모형을 그대로 혹은 일부분을 바꾸어 적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라. 각주를 달았으나 선행연구의 각주와 비교해 볼 때 동일자료(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동일한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경우

마. 이미 발표된 이론 또는 문장, 도표, 삽화, 통계 등을 각주 표시 없이 활용한 경우

바. 선행연구의 특수한 모형(또는 도표, 삽화, 통계)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로 정리해놓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사. 연구자(본인) 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하여 사회에 알려지거나(석·박사 학위 논문 등) 입상한 논문을 부분 변용·기술한 경우

아. 선행연구와 외형적인 구조·구성은 다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

자. 시범학교 운영 연구, 시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제출한 경우